

포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공헌한 국내외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창

협회 임직원 또는 회원단체(시도협회, 연맹단체, 등록팀) 및 그 회원, 심판, 감독관 등 협회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업무 수행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하는 상

2. 공로상

협회 직원이 아닌 자로서 축구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

3. 감사상

표창 및 공로상 대상이 아닌 자로서 축구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

4. 대회상

경기와 관련하여 경기 주최(주관) 단체 또는 협회가 주는 상

가. 단체상

- 1) 우승
- 2) 준우승
- 3) 3위
- 4) 페어플레이상

나. 개인상

- 1) 최우수 선수상
- 2) 우수 선수상
- 3) 최다 득점상

- 4) 수비상
- 5) 골키퍼상
- 6) 도움상
- 7) 지도자상
- 8) 심판상

다. 그외 필요에 의해 별도로 주는 상

5. 명예의 전당 헌액 :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별도 규정에 의해 주는 상.

6. 기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상.

제4조 (심의 기구)

포상의 심의는 다음의 대상에 따라 각각 심의 기구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① 일반적인 포상은 포상위원회가 심의한다.
- ② 협회,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 직원에 대한 포상은 협회 및 해당 기관의 처무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가 본 포상 규정에 준하여 심의한다.
- ③ 대회상은 경기 주최(주관) 단체가 심의한다.
- ④ 명예의 전당 헌액은 별도 규정에 의해 특별 기구를 만들어 심의한다.
- ⑤ 재심은 협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 포상 재심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단, 포상 재심위원회 위원은 해당 사안을 다룬 포상위원회 위원과 달라야 한다.

제5조 (포상위원회의 구성)

- ①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비상설로 두며, 심의 안건 종결시 자동 해산된다.
-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③ 위원장은 협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④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⑤ 협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 (포상위원회 운영)

- ① 포상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에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된다.
- ② 포상위원회는 위촉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 대상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팩스, 이메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개최되는 포상위원회의 주인을 얻어야 한다.

③ 포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조직(협회 사무처, 분과위원회, 시도 협회,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과 관련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조직 및 관련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 (시기)

① 포상시기는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 포상은 매년 실시하며, 수시 포상은 필요에 따라 특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제8조 (추천)

① 협회는 필요시 협회 임직원, 회원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 별지 1 <포상추천서> 양식에 의해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추천은 포상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협회 사무처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후, 해당 포상 심의기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회상은 대회 주최(주관) 기관이 시상하고 협회에 보고한다. 단, 협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이후라도 그 시상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심의 및 확정)

포상은 제4조에 명시된 기구에서 심의하고, 이사회가 주인 또는 확정한다.

제10조 (통보)

포상이 확정된 후 협회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2 <포상통보서> 양식에 의해 해당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한다.

제11조 (부상)

포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장, 트로피 등과 별개로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대리 수상)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재심)

시행한 포상에 대해 포상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에 의해 포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이 청구되거나,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 관리)

협회 사무처는 포상 결과를 수록한 포상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포상)

- ① 시·도협회는 자체 행정 관할 구역내에서 포상할 수 있고, 연맹단체는 소속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별지 3 <포상 보고서> 양식에 의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각 단체의 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협회는 해당 포상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직접 관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와 직접 관여는 해당 심의 기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포상은 본 규정에 준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 ④ 협회는 회원단체의 포상규정을 심의하고 인준한다.

부 칙

제1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및 대한체육회 상벌규정 및 각종 대회규정을 준용한다. 위의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위원회 또는 해당 포상 심의기구의 결정에 의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2012년 10월 9일 협회 이사회 승인후 시행한다.

별지 1



포 상 추 천 서

부 문		1. 공로상() 2. 표창() 3. 감사상() 4. 기타()
피추천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이름	
추천 사유		
<p>위 사람을 포상 대상으로 추천합니다.</p> <p>년 월 일</p> <p>추천인 이 름 :</p> <p>소 속 :</p> <p>직 위 :</p> <p>연락처 :</p> <p>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p>		

별지 2



포 상 통 보 서

이 름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포상명		포상 근거	포상 규정 제 조 항
포상 일시, 장소			
포상 사유			
<p>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 포상을 통보합니다</p> <p>년 월 일</p> <p>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p>			

별지 3



포 상 보 고 서

번호	이름	소속	직위	포상명	포상일	포상 사유

위의 사람(단체)을 포상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